

[민변의窓]

회원 1,000명 시대의 민변

장주영 회원

민변의 회원이 곧 1,000명을 돌파할 예정이다. 1988년에 51명의 회원으로 창립한 민변이 17년 만인 2005년에 회원수가 500명을 넘어섰고, 다시 10년 만에 1,000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같은 목적 아래 자발적으로 모여 매월 적지 않은 회비를 내는 변호사 회원이 1,000명이라면 놀랄만한 숫자이다. 민변의 성장은 그동안 민변의 선배, 동료, 후배 회원 모두가 창립이념인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해 왔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시민운동,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이 이끌어 왔고 민주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지지함으로써 쟁취되었다. 민변은 이 과정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변론하고 지원하면서 민주주의의 횃불이 꺼지지 않고 더욱 활활 타오르도록 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진보세력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으로 인하여 독재정권시절과 별 다른없는 민주회복운동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민주화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부분의 운동역량이 정체 또는 퇴보되고 있는 반면에, 민변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법에 의한 통치를 가장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항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성취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활동 영역을 더욱 확대하지 못하는 한계를 느끼는 우리와 달리, 외부 인사가 한국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는 민변과 어느 한 시민단체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민변을 바라보는 내부의 시각과 외부의 시각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느꼈다. 정치적·경제적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는 핵심적인 버팀목으로서 민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민변은 회원 수의 증가와 함께 법조환경의 변화, 시대변화에 따라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온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 관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조직운동을 재점검하고 체계적으로 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회원 수의 양적 증가가 조직 운영의 질적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내·외부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민변의 이념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회원 수의 증가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회원 1,000명 시대를 맞아 위상에 걸맞는 활동을 하기 위한 조직의 운영과 변화를 크게 4가

지 부분, 즉 민변 내부 활동과 조직 운영의 발전적 변화, 전체 법조환경의 변동 속에서 민변의 역할, 시민과의 관계, NGO로서의 정체성 유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첫째, 민변은 법률전문가단체로서 공익변론과 법제도 개혁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익변론은 개인의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고 그 효과가 당사자에게 미치지만, 법제도 개혁은 관련되는 국민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영향이 준다는 점에서 효과가 광범위하다. 공익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과 제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민변 활동의 큰 장점 중의 하나다. 이러한 민변 활동의 두 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강조되어 왔는데, 분야별로 질적인 편차가 있다. 앞으로 민변은 과거처럼 회원 각자의 희생이나 헌신에 맡기지 않고 단체 차원에서 인력과 조직,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활동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단체로서 회원들의 전문성을 기르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기본이다.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제한 또는 박탈하는 일이고 따라서 강력한 저항이 수반되는데 그 저항과 반대논리를 극복하고 설득하기 위한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신입회원들이 공익변론이나 법제도 개혁 논의에 참여하여 선·후배, 동료들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어 운영한다면 공익변호사의 재생산구조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된다. 민변 조직을 공식적인 법조단체(가칭 민주변호사회)로 전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변호사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능하고, 설령 법 개정으로 공식 단체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문제, 변호사법의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급변하는 법조환경에서 민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매년 많은 신규 법조인력이 배출되면서 법원과 검찰, 변호사 직역에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법원과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변호사단체의 올바른 역할을 견인하는 일은 민변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법조일원화 등을 통해 법원 또는 검찰에 들어가 사법의 민주화를 직접 실천할 인력의 배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는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공동사무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민변이 이들 사무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도 고민거리다. 공익변호사그룹은 조직운영과 활동에서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민변과 상호지원 및 보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변이 공익변호사사무실의 설립 및 운영을 실무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협력체계의 구축 및 유지가 더욱 쉬워질 것이다. 만약 외부 공익변호사그룹이 민변과 별개로 독자적인 행보를 걷는다면 민변을 포함한 파편화된 공익활동의 효과와 영향력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변이 단지 공익변호사단체들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셋째, 시민들과의 합리적인 관계설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민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주시민과의 우호적인 연대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은 민변의 노력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언제나 민주시민들의 참여와 지지 속에 진행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민변은 늘 민주시민들과 함께 해왔으나 민변이 앞장서서 선도해 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민변이 법률전문가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주시민들과 서로 소통하며 함께 하는 노력은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민변과 민주시민들이 상호간에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협력한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재도약을 기약할 수 있다. 법률전문가단체라고 해서 일종의 엘리트의식에 젖거나 전문가적 우월성에 빠져 민주시민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민변의 활동이 우리 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 채 자기만족적인 독백에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민변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NGO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나 공직(행정부, 법원, 검찰 등)에 진출하는 회원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지금 당장의 현안은 아니지만 앞으로 회원들이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5년 총회에서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정무직 공무원의 회원자격상실을 논의한 적이 있다. 서로의 부자연스런 속박을 풀어서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 각자 활동하게 하자는 주장과 민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적극 활용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회원자격상실까지는 지나치다는 의견이 대립되었다. 당시 격론을 벌인 끝에 회원자격상실안은 부결되었으나 이제는 달리 생각해 볼 문제이다. 민변이 NGO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에 도움이 되고 다른 분야로 진출한 회원들의 부담도 더는 일이 아닌가 한다. 민변의 목표에 접근하는 여러 갈래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민변은, 선배의 활동과 경험이 후배들에게 공유되고 후배들은 선배의 전문성과 지혜를 시대에 맞게 재창조하는 유기적인 생명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동일한 목적 아래 뭉친 변호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민변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커다란 장점 중의 하나이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 사회를 실천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식으로 무장한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 되기를 바란다. 회원 1,000명 시대를 맞아 민변의 조직과 운영, 재정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와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실천하는 지혜를 모아야겠다.